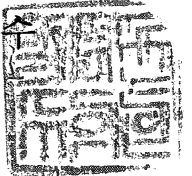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8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2. 3. 11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2. 1. 27.)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전면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팀신설

- 안 제8조(건설도시국)제2항제2호 : 중대재해예방(신설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

- 안 제14조(설치)제1항 : 시행령 제75조 → 제73조

- 안 제21조(설치)제1항 : 시행령 제78조 → 제76조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(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3조, 제76조, 제125조

(3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2. 2. 14. ~ 3. 6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안전기획·사회재난·자연재난·하천시설·하천관리”를  
“안전기획·중대재해예방·사회재난·자연재난·하천시설·하천관리”로  
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제75조”를 “제73조”로 하고 제2항 중 “옥포면”을 “옥포읍”  
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78조”를 “제76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건설도시국) ① (생략)<br>② (생략)<br>1. (생략)<br>2. <u>안전기획·사회재난·자연재난·하천시설·하천관리</u> 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조(건설도시국) ① (생략)<br>② (생략)<br>1. (생략)<br>2. <u>안전기획·중대재해예방·사회재난·자연재난·하천시설·하천관리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4조(설치) ① 법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<u>제75조</u> 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br>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<u>옥포면</u> 비슬로 2040에 둔다. | 제14조(설치) ① -----<br>----- <u>제73조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② -----<br><u>옥포읍</u> -----. |
| 제21조(설치) ① 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<u>제78조</u> 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·면 출장소를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1조(설치) ① -----<br>----- <u>제76조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73조(직속기관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76조(출장소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원거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3.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.

1.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(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)의 경우
2.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

